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.

발 의 자 : 서병수 · 안철수 · 조경태
지성호 · 김성원 · 신원식
이헌승 · 박수영 · 김학용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,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. 한편,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됨.

그런데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공급 관련 규모, 비용분담, 개교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.

이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,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).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교육학·법학·경제학·건축학·건축공학 등 교육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
2. 변호사·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교육 및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⑤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4(위원회의 조정 등) ① 위원회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한다.

- 1.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위치·규모·설치기준 등에 관한 분쟁
- 2.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·설치 관련 비용에 관한 분쟁
- 3. 개교시기에 관한 분쟁
- 4. 그 밖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

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, 상대방은 그 조정
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(訴)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의5(조사 및 의견 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또는 조정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의6(합의의 권고)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4조의7(조정 의 효력 등)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조정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조정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정당사자가 제4조의6에 따라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위원장과 각 조정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학교시설 등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학교 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 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 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</u> <u>1. 교육학·법학·경제학·건축 학·건축공학 등 교육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「고 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</u>

2. 변호사·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교육 및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⑤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4(위원회의 조정 등) ①

위원회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
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
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어느
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
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·조
정한다.

1.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
위치·규모·설치기준 등에
관한 분쟁

2.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
확보·설치 관련 비용에 관한
분쟁

3. 개교시기에 관한 분쟁

4. 그 밖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
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
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분쟁

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
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
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
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, 상대
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
다.

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
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

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
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
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
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거부
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
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중 어
느 한쪽이 소(訴)를 제기하면
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
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조
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
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
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
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
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
연장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
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
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
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당
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의5(조사 및 의견 청취) ①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
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부 소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또는 조정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의6(합의의 권고)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4조의7(조정의 효력 등)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조정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조정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정당사자가 제4조의6에 따라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위원장과 각 조정당사자는 이에 서명

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
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
력이 있다.